

미국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池 庚 鏽

韓國電子通信研究所 技術政策研究室

총무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행정전산망사업의 주요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전산자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시안의 총칙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법은 개인정보 즉,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법안 제3조에 따르면 음성 및 비음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도 적용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법안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개인 기록자료가 대량 집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법적, 개괄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전기통신(음성 및 비음성 통신) 사업 경영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층적이고 사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동법 시행령 입법과정에서도 입법자료로서 참고될 것을 기대한다.

I. 서 론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한 도청은 전신서비스가 개시될 때부터 행해졌으며, 전화의 경우도 그 탄생초부터 도청(盜聽)의^[1]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통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1930년대까지는 도청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부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司法) 당국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도청을 해왔다. 즉, 통신의 내용을 도청당한 개인이 “정부관헌에 의한 도청이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현법 제4조의

위반이라고 제소해도, 당시의 연방최고재판소는 통화가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 일수였다.

그런데 1934년 통신법은 “발신자가 허락한 사람의 수신을 금지”했지만, 국가의 안전확보에 관한 한 대통령의 특별권한에 의하여 전화의 도청이 허락되어 있었다. 이 조항의 확대해석이 닉슨 대통령 재임 당시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하여 대통령의 실각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7년 최고재판소는 종래의 판례를 깨고, “수정현법 제4조는 주거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압수·조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통화의 비밀도 현법상 관헌에 의한 조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사상 중요수단인 도청의 길이 막힘을 걱정했던 사법부와, 어느 경우에 어디까지 관헌에 협력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한계설정을 요구했던 전화업계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주장하는 연방의회 의원들과 타협의 산물로 제정되었던 것이 1968년 “종합범죄수사법”이다. 이에 의해 형법 제119장이 제정되어 전화도청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동시에, 관헌이 도청할 수 있는 경우와 도청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 통신법 제605조도 동법에 의해 개정되어 무선통신에만 적용되게 되었다.

당시의 개정 형법은 공중통신과 구두통신(도청은 없다는 기대하에 발설했던 통신)밖에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우편(electronic mail) 등 공중통신 사업자와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른바 “전자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편지의 정도로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자업체와, 도청할 수 있는 범죄종류의 확대와, 해가절차의 완화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요망이 연결되어 “1986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이 성립되었다.

그간 연방의회와 최고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반대로 행정부는 시민에 관한 정보에 더욱 접근(access)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살망해 왔으므로, 완만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했다. 현재 미국인은 대부분 개인간 전기통신에 있어서 광범위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셀(cell) 방식 자동차전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같이 앞으로도 정책상의 격이 대립되는 분야가 발생하겠지만 1986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이미 표본적인 법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일반인은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이나 마케팅 수법에 대해서는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통신의 프라이버시 경우에는 “통신의 내용 자체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통신을 했던 사실에 대한 프라이버시”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전자의 프라이버시는 통신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통신 실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메시지를 타인에 수신하는 경우, 타인에게 누설되는 경우, 타인에 의해 기록되는 경우, 타인에 의해 도청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서 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법한 제3자의 도청이 그것이다.

둘째, 후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와의 통신에 사용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통상 비밀사항이라고 생각되면서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보의 예로서는 성인용 CATV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한 정보, 어느 전화가입자의 전화기에서 다이얼된 전화번호, 전자사서함으로 통신한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 제2의 영역에서는 통신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여부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이전에는 연방정책 결정자의 주된 관심이 제1의 영역에 있었지만, 양자 모두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 앞으로 모두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II. 통신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

1. 통신의 내용

전화의 상용서비스(services in commercial base)와 거의 동시에 전화의 도청행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청기술이 고안되자마자, 도청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도 고안되었다. 즉, 전화통화를 스크램블(scramble)^[2]해서 의미를 알 수 없게 한 최초의 특허장자는 1881년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스크램블러(scrambler) 장치를 사용하는 이용자수가 적고, 또한 연방법상 도청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었으므로 제1차 세계대전경까지도 도청행위가 널리 행해졌다. 또한 도청은 헌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즉, 1934년에 합중국 최고재판소는 “전화통화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권리장전(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도청의 위헌성(違憲性)을 부정했다. 당시 최고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수상 헌법 제4조가 보호되고 있는 것은 유체물(有體物)이며 무체물(無體物)인 통화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의 일부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같은 해에 통신법을 제정하여 전화통화의 도청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3]

따라서 그후 최고재판소는 헌법으로 보호된 사유재산에 대해 더욱 광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최고재판소는 1966년에 경찰의 전자적 감시행위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뉴욕주의 “도청금지법”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고 하는 소(訴)의 판결로서 내려졌다. 다음 해 최고재판소는 정부가 판사의 명령서를 발부받지 않고도 공공의 장소를 도청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공중전화와 같은 공공의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최고재판소는 “헌법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여 일축했다.

최고재판소가 1960년대에 도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연방의회는 종합범죄수사법(법률 제90-351호)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는 정부의 관리가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종래이상으로 많이 설정했다. 연방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률에는 최고재판소가 요구했던 도청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Volume III : 세3권). 이 법률의 제3권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경우, 적어도 한편의 동의가 있으면 정부의 관리가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69년尼克遜 취임시, 닉슨정권이 제3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닉슨정권은 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된 국내단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도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 그러나, 이 정부견해는 1972년에 최고재판소에 의해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닉슨대통령 재선위원회(再選委員會)의 요청에 따라 워터게이트 건물(Watergate Building)의 민주당 본부에 몰래 침입했던 범인에 체포되었고 이는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비화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86년까지 전화의 도청에 관해서는 종합범죄수사법이 주된 기준이었다. 동법 제3권은 “보통의 전화”에 의한 “구두통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electronic mail이나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고속데이터통신, 유선과 광섬유에 의한 컴퓨터간의 데이터 전송 등과, 또 당시 막 출현하기 시작했던 뉴미디어에 의한 비음성통신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들 통신은 구두통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도청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셀방식전화, 마이크로웨이브 전송 등이 일반화함에 따라, 사법부와 전기통신 산업체는 연방의회에 대해 이러한 분야를 규율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담을 법률을 제정하도록 수회에 걸쳐 요청했다. 연방의회는 결국 이 요청에 따르게 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이 법률을 논하기에 앞서 앞에서 논했던 통신 프라이버시의 제2영역, 즉, “통신의 사용”에 관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통신의 사용

종합범죄수사법 제3권(Volume 3)은 “통신의 사용”에 관한 정보도 “통신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게 “내용”을 광의로 정의함으로써 통신 사용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였다. 따라서, “사용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별히 법원의 명령을 발부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제3권에서는 대상외로 되어 있는 각종 통신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사용정보(즉, 보통 전화이외의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통신사용에 관한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1978년에 Pen Register^[5] 사용은 제3권에 의해서도 또는 제3의 법률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1980년대 초에 오하이오주의 컬럼부스라는 영화관 경영자가 포르노영화 상영건으로 체포되었다. 이 경

영자는 외설에 관한 지역적 기준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관 주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ATV 성인용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CUBE System(CATV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WANER Communications의 서류를 압수해 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상영했던 것과 동일한 필름이 이미 CUBE CATV로 방송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영화관 주인의 반박근거였다. 자기가 상영했던 것과 같은 영화가 CUBE로 방송되고 있고, 거기에는 시의회의원 등 지역사회의 지도자들도 가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은 지역社会의 외설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된다면 지역社会의 지도자들의 체면은 매우 손상될 지경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이 CATV 업계에 경종이 되어 CATV 업계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정보)을 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자성론이 일었다. 결국 WANER는 개개의 시청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시청자의 수만을 제시한 “요약된 데이타”를 제공했다(결국 이 지방 검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다.)

마침 이 때,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한 명의 남자가 마약 거래로 체포되어 담당 검사가 이 남자의 일렉트로닉 메일 기록을 요구했다. 이 기록에 의해 증거를 굳힐 수 있었고, 더욱 확실히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렉트로닉 메일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는 담당검사의 이 요구에 저항했다. 그 결과 일렉트로닉 메일의 데이타화일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서 분쟁이 계속되었지만,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결말이 나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비디오텍스 산업으로 파급되어 개개 고객의 이용 데이타 발표를 금지하는 윤용기준을 설정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사적인 전자통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제시했다.

통신의 이용에 대한 데이타는 사법상(司法上)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누가 어떤 통신을 수신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데이타는 수신인에 관한 귀중한 판촉용 데이타를 제공한다. CATV 회사는 이 데이타를 마케팅 전문회사에 팔아서 종종 CATV 가입자를 분개시키고 있다.^[6] 이에 따라서 이들 데이타의 부당한 이용을 막기 위해 CATV 업자가 고객간에 보호조약이 체결되고 공정거래강령이 제정되었으

며 다음에 논할 새로운 법률은 이들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열람시킬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 데이터를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 업체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화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의 마케팅 면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법률로 의무화되었던 정부기관에 대한 공개가 아닌 상업 목적을 위한 공개)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III. 1986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1. 법 개요

1960년대 후반에 제정되었던 “도청법”的 불완전성이 전자통신산업, 시민단체, 입법관련 정책 연구자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갖는 연방의회의원 등에 의하여 지적됨으로써 1960년에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위 각 압력단체들은 각각 전자통신(전술한 “내용”과 “사용”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산업 단체와 그 회원사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공격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판매부진을 우려했다. 업계는 자기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프라이버시를 굳게 보증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서비스가 더욱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의회 로비활동을 했던 그룹은 비디오텍스 산업협회, 일렉트로닉 메일 협회, AT&T 및 BELL 전화회사들이었다.

미국시민 자유연합(ACLU)은 정부에 의한 수색과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데에 오랜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 때문에 이 단체의 활동과 전자통신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자연스럽게 조화되었다. ACLU는 1984년부터 1985년에 걸쳐 이 문제에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프라이버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법을 개정하라는 민원(民願)의 규합을 원조해 왔다.

연방의회의 부속기관으로 기술변화의 영향분석 임무를 맡은 기술평가국(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은 그 검토대상에 전기통신을 포함했다. 의회는 공중 (및 기업과 정부)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를 원했으므로, 사법당국에서 통신을 모니터할 권한을 갖고 싶다는 요망에 대해서 냉담했다. 의회의 이러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 비슷한 법안은 이전 회기에도 몇 번인가 제안된 적이 있었다. 그

러나 법무부가 범죄수사 및 국내 치안능력이 약해진다고 반대해서 이들 법안을 반대하였다. 사법성은 법률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사법 고유의 임무때문에 전자적 도청능력을 감축시키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일렉트로닉 메일 업자는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에 대비하여 요금청구 자료로서 전송 기록을 갖고 있고, 이들은 은행 기록과 같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메일 업자를 법률상 “제3자의 기록 보유자”로^[7] 보고 있었다. 일렉트로닉 메일 업계는 사업상 및 기업 이미지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품이 제1종 우편의 법률상 지위보다^[8] 낮아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사법당국과 프라이버시 보호론자의 사이에 이와같은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의 성립이 1년 정도 늦어졌다. 법무부는 교섭과정에서 행정제출명령과 법원의 별처부제출명령과의 중간에 새로운 종류의 제출명령제도를 만들어, 이 새로운 제도의 태두리안에서 일렉트로닉 메일에 접근해도 좋다는 타협안을 제출했지만, 일렉트로닉 메일업자, 프라이버시보호연합, 연방의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지지 의원들은 승락하지 않았다. 철저한 토론과 로비 활동 끝에 법무부는 결국 신법을 지지하는 압력단체의 토론결과(이 새로운 법률이 사법부문의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범죄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의)에 설득되었다. 법무부의 태도를 변경시켰던 또 하나의 이유는 신법에 의하면 일렉트로닉 메일이 잠재적 이용희망자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통신수단이 된다는 이유였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10월 21일에 서명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ECPA, 법률 99-508호)에는 전자통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가 정책이 총망라되었다. 이 법률은 1986년 도청법처럼 전화에 의한 구두통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형태의 전자통신을 보호함과 아울러 전자통신(일렉트로닉 메일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시설까지도 보호하고 있다.^[9]

따라서 이 법률은 이미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설치될 거의 모든 메인프레임 컴퓨터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workstation)과 미니 컴퓨터 뿐만 아니라, 가정용 퍼스널 컴퓨터도^[10]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법률이 거대하고 급속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11] 일렉트로닉 메일 산업을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법률의 또 하나의 효과는 미국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외국 정부의 우려(즉, 업계의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법제는 유럽의회가 제정했던 프라이버시 기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프라이버시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적어도 미국의 데이터서비스업계가 경쟁상 당명하고 있던 하나의 벽을 제거하고, 국제적인 오해의 불씨를 제거시킨 셈이다.

2. 코드레스 전화 보호문제

암호화된 무선신호와 셀 방식 자동차전화 등의 무선신호는 보호받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전자통신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무선통신에는 “일반공중이 용이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무선통신”과, 셀 방식이외의 재래형 자동차무선 서비스와 해사무선, 항공무선, 공공용 보안무선과 특정의 위성신호가 있다. 공중이 용이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무선신호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들을 보호하기로 하면 타인의 무선통신을 우연히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 코드레스 전화로 통화할 때 코드레스 전화의 수화기와 본체 장치 사이의 통신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통신은 들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FM 수신기로 용이하게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 ECPA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제정되어 있다. 위법한 상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개인이 도청하였을 때(내부자거래를 위해 시장정보를 도청했을 때 등)는 엄한 벌칙이 부과된다. 우연히 몰래 들었던 경우의 형벌은 훨씬 가볍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발적인 도청에 대한 처벌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오래된 TV 수상기는 셀 방식 자동차전화의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미 좋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AT&T가 그 간부에게 공급하고 있는 셀 방식 자동차전화기에는 TV 수상기에 의한 도청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셀 방식 자동차전화기의 메이커는 그 판매된 기기에 도청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지 않는다.

법률제정자들은 셀 방식 자동차전화의 통화를 도청한 사람과 코드레스 전화의 통화를 도청한 사람의 처벌이 상이한 것은 도청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FM 라디오와 구형 TV로 용이하게 수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별은 헛된 것이다. 양쪽 모두 용이하게 암호화 할 수 있고, 암호화 기능이 붙은 장치도 다수 생산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이 모순은 결국 기술(암호화)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발신자는 통화할 상대가 코드레스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도, 발신자는 상대가 자유로이 수신당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레스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전화를 전 사람은 자신의 통화내용이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률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지 못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일렉트로닉 메일 서비스처럼 축적되는 통신의 내용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벌칙부제출 명령을 법원에서 발부받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한 통신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법률에서는 공중유선통신 또는 전자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그 통신의 상대이외의 사람에게 통신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범죄의 실행”에 관련된다고 심증이 가는 통신을 직원의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열람하는 것은 인정된다. 전기통신 이용 정보의 액세스에 대한 본법의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펜레지스터(pen register)와 포착역탐지기에 대해서는 본법은 그 사용을 제3권에 비추어 보아서 적법하다고 했던 법원의 1978년 판결을 수정하여 정부관리가 법원명령을 받아 사용한 경우 및 통신회사가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은 제3권의 “내용”的 정의를 좁혀, “통신의 실재”와 “상대의 이름 등”은 통신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13]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은 이 정보에 정부의 액세스를 제한하고, 이것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했던 축적된 정보의 내용에 액세스할 경우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전통지의무만을 면제했다. 따라서 과금(요금)정보와 통신상대의 신원 등의 사무상의 기록에는 한정된 보호조치가 가해졌지만 정부가 용이하게 접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이외의 사람에게 자유스럽게 공개하는 것이 인정된다. 전자통신의 프라이버시법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한도와 인정받은 액세스의 명확한 정의규정에 의해 일렉트로닉

메일파(기타 컴퓨터통신)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이 불식되었다. 이 법률의 전체적인 효과는 축적된 전자통신의 프라이버시를 그 배달 전이나 후에도 보호하는 것이다. 축적된 메세지를 변경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일렉트로닉 메시지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인정받은 액세스 조건의 범위를 일탈(逸脱)하기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경범죄를 구성한다. 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하여서 금고도 포함되어 있다.

3. 정부에 의한 액세스의 완화

그러나 이 법률이 방지하려는 주된 대상은 액세스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액세스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의한 통신의 액세스, 특히 이용에 관한 정보의 액세스에 대해서는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은 오히려 프라이버시 보호를 완만하게 하고 있다. 전자동신 프라이버시법은 한편으로 제3권의 도청법하에서 존재했던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완만하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부가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이 완화를 실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동신 프라이버시법은 나음과 같이 개정됨으로써 국가가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법원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30여 종으로 증대하였다.
- 법원에 도전히 가명령 신청서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 사법관리의 수를 증원하였다.
- 모든 정부기관에 축적된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FBI가 노성을 할 때 민간업사에게 그 실행을 청부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 전기통신 및 축적된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법원명령을 받는데 있어서 법률 조건은 완화하였다.
- 코드레스 전화에 의한 통화와 포켓벨에 의한 신호의 일부에 대해 정부에 의한 액세스에 설정된 장해를 모두 제거하였다.
- 법원명령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만 처음으로 자동차추적용 발신장치와 절체식 전화도청장치의^[14] 사용을 인정하였다.
- 정부관리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선의”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관리를 민사소송과 민사처벌로부터 면책하였다(피해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반자에게 대항할 능력을 제한을 하고 있다.)

- 통신(내용이 아니라) 이용상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중 특히 마지막 부분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정에 의해, 예를 들면 시민의 통신망이용 데이터를 감시하는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비밀정보를 누설했던 사람을 수사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15]

4. 통화의 녹음문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의 성립에 관련된 부수적 사항으로서, 전화통화의 녹음에 관한 법률은 제3자에 의한 녹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시민이 자신이 하는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이며, 통화상대에게 녹음을 하고 있음을 알릴 법적 의무도 없다. 전화통화를 스스로 무단녹음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적어도 통화의 비밀성의 침해로 간주하고, 이것을 법률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있었으며 가장 최근인 1984년에도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 이 법제안은 연방정부의 직원과 고위관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레이건 집권하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스캔들 후에 제기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매우 가까운 조언자로 합중국정보청(U.S. Information Agency)의 장관이었던 찰스.Z.위크가 상대방이 모르게 수천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민주당의 하워드 메체바움 상원의원과 델반바즈 상원의원은 정부직원이 전화를 녹음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키는 형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집행, 방첩, 국가안전에 관련된 공무원은 적용제외로 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개정조치를 비난하고 이것은 범죄수사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지도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메체바움의원, 반바즈의원은 자신들의 제안에 반대가 있음에 놀랐다고 논하고, 메체바움의원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녹음된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이 개정은 찬성 41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전화통화 녹음의 한 가지 형태를 금지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외부에 의한 스캔들의 폭로가 어떻게 빨리 의회를 움직이는가를 나타낸 일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녹음에 대한 법률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는 개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5.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의 입법효과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의 성립에 의해 미국에는 강경한 법률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행정부문에 대해서도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이 법률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통신에 대해서 “권한 없는 사람이 그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의 벌칙을 정하고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를 개시했던 사람을 처벌하기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통신 서비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자통신회사로부터 서비스를 흥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의 범위를 보면, 미국은 광범위한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률에 대해 프라이버시옹호론자들은 많은 점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모순된 점도 있었지만, 많은 통신미디어에 대해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대폭적인 개정은 없을 것이고 미조정적인 개정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 분야는 코드레스 전화에 의한 통화의 프라이버시이다(특히 일반전화 사용자가 코드레스 전화의 사용자와 통화하고 있을 경우의 프라이버시). 그러나 전화통신 프라이버시법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신법이나 개정법은 제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없는 한, 정부에 의한 시민의 감시를 더욱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국가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법률집행기관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등,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시민의 보호는 더욱 약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ECPA는 새로운 통화수단과 통신 서비스를 예상한 뒤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광대역 서비스 종합데이타통신망(BISDN), 기타 지능을 갖춘 통신망에 적당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로 개시됨에 따라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분쟁은 BISDN 또는 기타 장래의 통신망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에 그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전화망으로 dial a porno가 제공되고 있고, 프랑스의 미니텔이 성적(性的) 교제의 파트너를 찾기에 사용되고 있듯이^[16] 새로운 통신망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법적투쟁의 성격은 전기통신의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대부분 보호받고 있는 통신망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법률의 애매한 부분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될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기술이 통신업체의 표준이 된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기준을 기술적으로 빠져 나갈 구멍은 적어도 금세기 말까지는 막혀 있다. 분명치 않은 것은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은 과연 정부의 감시능력을 배가시킬 것인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것인지 하는 점이다. 소수의 법률 전문가는 전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IV. 결 론

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여러 가지 목표체계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여타의 바람직한 목표(예, 지식의 보급)와 상반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 및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도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술자와 전기통신 경영자는 때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불유쾌한 암거래와 경매(stand·play)와 같다고 하지만 이 정치 시스템이(AT&T의 분할과 전화회사의 투자에 대한 보수율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통신산업의 구조와 수익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정책”(프라이버시 문제를 지배하는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견해)의 면에서 이 정치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의 요체는 “균형(balance)”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의미한 바는 프라이버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귀중한 목표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프라이버시의 추구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귀중한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귀중한 목표로서는 안정적인 경제적 투자,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사회안정의 보호 등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프라이버시의 논의에 있어서, 종종 “균형”的 중요성을 외치고, 이 견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의 말은 이 정책 결정자들의 진정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전기통신 시스템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본래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좁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통신 시스템이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 시스템은 적어도 정보를 개인에게 전달할 길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즉, 과거에는 통신시스템이 이용자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었다.^[17] 따라서 전기통신 시스템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기통신 시스템이 이용자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관한 정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통신 시스템이 점점 개인주의화된 개인의 요망에 부응하게 됨에 따라서, 전기통신 시스템은 개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전기통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 및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사람들이 서로 전자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술한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감소시키지만, 전자통신은 적어도 문서통신과 비교해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수화기로 친구들과 개인적인 문제를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수화기를 놓으면 통신의 내용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다는 특성은 옛날과^[18] 비교하면 훨씬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통신방법이라는 것이다.

전기통신 프라이버시가 인권을 계속 확대한 결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여했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전체주의 국가들의 프라이버시 기준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프라이버시 기준사이에 커다란 차이(gap)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와 인권과의 사이에 적어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화회사가 전기통신의 이용 및 그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에는 회사로서의 필요성을 초월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기통신이 도청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 사람들은 별로 전기통신을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화회사가 가진 강점의 하나는, 시민들이 전화회사를 높이 평가하여, 전화회사에서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테 있다. 이 평가를 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화회사는 무형의 대손실은 물론 유형의 손실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낮추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사회의 안전

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과 프라이버시와는 모순된 목표로서, 한편이 과대해지면 다른 편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시스템 구축자와 정책 시스템 결정자의 쌍방에 있어서 이 면에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는 모순된 두 가지 요구를 단지 균형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더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 시스템,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註 解

- [1] 본고에서의 도청이란 음성통화를 당사자 몰래 제3자가 엿듣는 것 뿐 아니라, 비음성통신의 경우에도 그 통신의 내용 및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거나 검색하는 경우를 포함한 개념이다.
- [2] 통화를 도청해도 해독할 수 없도록 주파수 변조를 하는 것.
- [3] 서독의 DBP Telecom은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송한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통화데이터가 삭제되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안해 놓고 있으며 서독의 데이터보호위원회(FCDP; Federal Commission for Data Protection)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망에 축적 저장되는 통화데이터의 양을 제한할 것을 골자로하는 법률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FCDP와 DBP Telecom은 종합정보통신망의 구현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보호에 대해 서로 대립된 견해를 보여왔다. 예를 들면 FCDP가 마약 사용자, AIDS 환자, 남편에게 폭력당하는 부인 등에 대한 핫라인(hot line) 통화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하는데 비해, DBP Telecom에서는 항목별 청구서 작성, 크레디트카드 통화, 고도 전기통신 서비스 등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에는 통화식별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DBP Telecom에서는 “우리는 고객에게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데이터의 저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위원회와 DBP Telecom은 모두 미국 등 여타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청구서 작성과 크레디트카드 전화서비스의 개발이 서독

내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사독의 프라이버시 논쟁은 첫째, 수신자측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및 시작을 포함한 통화완료정보(call-complétion information)와 둘째, 수신자 전화기에서 발생한 전화번호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신자 식별정보(caller-identification information)의 2종류의 정보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정보와 이 정보의 처리(manipulation)는 ISDN과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FCDP에서는 통화완료 정보의 저장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FCDP가 수신측 전화번호의 마지막 2자리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저장을 허용하는 결충안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DBP Telecom에서는 이를 거절했는데, “발신통화자는 자신이 돌린 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며 논쟁의 발생 시 모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다. DBP Telecom은 통화데이터의 저장에 대한 FCDP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신통화자가 자신의 통화완료 정보를 청구서 발송후 24시간 또는 80일 이내에 삭제되도록 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발신자 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신측이 발신자 식별정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결충안을 놓고 양측이 균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이 논리는 행정부 자체를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의 일부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급기야는 보도기관에 국비를 누설시킨 장본인을 찾기 위해 몇몇 구성원에 대하여 수개월 동안 전화를 도청하기도 했었다.
- [5] Pen Register란 특정 전화에서 다이얼되었던 번호 또는 송출되었던 번호를 기록하거나 표시하는 장치이다. Pen Register는 제3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원격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종종 사용되는 별도의 장치로서 제3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하나의 장치는 포착역탐지장치(捕捉逆探知裝置)이다. 이 장치는 전화에 착신된 호(calls)의 전자적 임펄스(im-pulse)나 기타 임펄스를 포착해서 몇 번의 전화에서 전화가 걸려 왔는지를 알려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의 대부분은 전화회선에 직접 접

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청자는 모니터해야 할 전화 소유자의 구내에 침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입이므로 위법이다.

- [6] 필자는 몇년전 둘째아이의 탄생 두달 정도후에 모 은행으로부터 아기탄생 축하카드와 함께 아이의 이름이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통장을 우편으로 수령하였는데 예금통장에는 1,000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이것은 필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또는 필자의 신용카드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가 정보 소유자인 필자의 허락없이 담당 관리자의 목인하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 [7] 제3자 기록 보유자는 현재 은행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제출명령(어느 검찰청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권이 있는 관리에게 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8] 제1종 우편은 그 우편물의 개폐(開皮)가 범죄의 중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한 선서공술서를 법관에게 제출하고, 법관이 그 이유를 평가한 뒤에 교부된 벌칙부제출영장을 취득한 경우에만 개폐할 수 있다.
- [9] ECPA에서는 전자통신을 “모든 성격의 신호, 문서, 화상, 음향,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그 전부가 유선, 무선, 전자, 광전자, 또는 광자광학 시스템에 의해 전송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10] 가정용 PC의 약 10㎱센트 정도가 일렉트로닉 메일에 사용되고 있음.
- [11]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일렉트로닉 메일은 1985년에 500만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2억 5,000만의 통신문이 전송되었다.
- [12] 미국 법무부의 어느 직원은, 코드レス 전화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뒤틀에서 이웃과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13] “통신의 존재”와 “상대방의 이름 등”은 이용에 관한 정보의 일종이다.
- [14] 여러대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장치
- [15] 어느 번호사는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은 전체적으로 연방기관에 의해 감시될 가능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16] 기술발전은 본래 양면적인 성격이 있듯이 TELETEL에서도 그러한 해악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임마누엘부인의 고백”이라는 포르노 소설을 미니텔의 브라운관으로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이 핑크메시지(pink message)의 전연판(傳言板)을 통하여 초면의 사이와도 접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FT에 권리금을 내고 코드번호를 취득한 서비스회사들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각종 성인잡지를 광고하고 미니텔 이용자는 미니텔을 두드려서 취미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부인의 고백을 볼 수도 있고, 임마누엘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도 있으며, 생면부지의 남녀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것이다. 가명을 사용하면서 성별, 나이, 국적, 지역, 직업 등 얼마든지 인적사항을 세분하여 원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그 대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니텔을 통해 하룻밤을 자셀 상대를 찾거나 동성애 등 변태취미를 암시하는 가명도 등장하고 있으며, 화면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강

도로 돌변하는 사고도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또 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니텔을 갖고 놀던 13세 소년이 성인남자와 동성애 교제코너에 빠져들게 되어 희생되는 사고도 발생하게 되었다. 지경용, 프랑스의 텔레벨 서비스 동향, 내부보존문서, 1989. 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p.23.

- [17] 장래의 동시통신에 있어서는 불가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용자의 소재에 대한 정보는 아마 필요할 것이다.
- [18]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는 우편 배달이 불규칙해서, 근처의 술집 테이블 위에 무더기로 갖다 놓고, 주민들이 시간 있을 때에 찾아와서 사기 앞으로 온 우편물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 후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대는 사회적, 사상적 발전에 따른 것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곧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전화가 가진 비밀유지 능력 덕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

筆者紹介



池 庚 鏞

1957年 7月 16日生

1979年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학사)

1989年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1991年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재학(박사 과정중)

1983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입소

1991年 3月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선임연구원